보수규정 시행규칙

제정 2021. 2.24 개정 2022. 3.22 시행 2022. 4. 1 개정 2022.10.25 시행 2022.11. 1 개정 2022.12.20 시행 2023. 1. 1 개정 2023. 3.28 시행 2023. 4. 1 개정 2023. 5.22 시행 2023. 5.24 개정 2023.11.20 시행 2024. 1. 1 개정 2023.11.29 시행 2024. 1. 1 개정 2023.12.27 시행 2024. 1. 1 개정 2024. 2.19 시행 2024. 2.19 개정 2024.12.27 시행 2025. 1. 1

- 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보수규정(이하 "규정"이라 한다)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) 규정 제3조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.
 - 1. 출산전후휴가 기간
 - 2.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
 - 3. 육아휴직 기간
 - 4.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

- 5.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, 그 밖의 사유로 공사의 승인을 받아 휴 업한 기간
- 제3조(휴가기간중의 보수) ①복무규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, 동 규칙 제21조에 따른 유·사산휴가의 경우 최초 60일분(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)의 보수이외에는 무급으로 한다.
 - ②복무규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한다. 다만, 동조 제2항에 따른 경우 추가 1일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한다.
 - ③복무규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는 최초 2일을 제외하고는 무급으로 한다. <개정 2024.12.27>
- ④복무규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한다. 제4조(휴직기간의 보수) ①인사규정 제31조제1항제4호의 휴직자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70%를 지급한다. 단, 휴직자가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, 그 사실을 공사에고지하여야 한다.
 - ②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법률상의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자 및 병역법에 의하여 현역으로 입대하는 경우에는 보수전액 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 - ③인사규정 제31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의하여 휴직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.
 - 1. 휴직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: 연봉월액 70%

- 2. 휴직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: 연봉월액 50%
- ④인사규정 제31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휴직한 자에 대하여는 그기간 중 연봉월액의 50%만을 지급한다. 이 경우 지급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⑤인사규정 제31조제1항제1호, 제3호, 제4호 및 제5호에 규정되지 않은 휴직의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- 제5조(대기발령 기간중의 보수) ①대기발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기간중 연봉월액의 85%만을 지급한다.
 - ②대기발령이 법원의 판결으로 무효 또는 취소되거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대기발령을 취소한 경우,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대기발령을 받은 자가 그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기간 동안 지급이 제한된 보수를 소급하여 지급한다. <신설 2023.3.28.>
- 제6조(결근기간중의 보수) ①복무규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사전 승인을 득한 결근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로 갈음하여 보수를 지급한 다. 다만, 잔여 연차휴가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 지 아니한다.
 - ②무단결근에 대해서는 해당 일수만큼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- 제7조(잔무처리기간 중의 보수) 퇴직자가 잔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계속 집무하는 때에는 재직당시의 보수를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한다. 다만, 그 일수는 15일 이내로 한다.

- 제8조(수습기간의 보수) ①인사규정 제14조에 따른 수습기간의 보수는 연봉월액의 80%만을 지급한다.
 -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습기간의 보수는 최저임금의 90% 이상이되어야 한다.
- 제9조(군경력 가산액) 규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군 경력자에 대한 가산액은 별표1에 따라 지급한다.
- 제10조(승진가급) 규정 제24조에 따른 승진가급은 별표2의 기준을 따른다. <개정 2023.11.29.><개정 2024.2.19.>
- 제11조(성과연봉중 경영평가성과급의 지급) ①규정 제27조에 따른 경영평가성과급은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지급한다. 단, 임원의경우는 기관장 경영계약 이행실적 평가결과 및 임원 경영성과계약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급한다. <개정 2022.3.22.><개정 2023.12.
 - ②경영평가성과급은 평가대상연도의 근무기간 중 연봉월액의 평균 금액에 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별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다.
 - ③경영평가성과급의 지급시기는 9월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사장은 지급월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 - ④기타 지급방법,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 반영비율 등 경영평가성과 급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.
- 제12조(직무실적평가급의 지급) ①규정 제22조 및 제27조의2에 따른 직무실적평가급은 매년 직원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사장이 정하는

- 바에 따라 차등지급한다.<개정 2022.10.25.><개정 2023.11.20.> <개정 2023.12.27.>
- ②기타 지급 방법 등 직무실적평가급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.<개정 2022.10.25.>

[본조 제목개정 2022.10.25.]

- 제13조(성과연봉중 내부평가급의 지급) ①규정 제27조의3에 따른 내부평가급은 매년 직원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사장이 정하는 바에따라 차등지급한다. <개정 2022.3.22.><개정 2023.12.27.>
 - ②기타 지급방법,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 반영비율 등 내부평가급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.
- 제14조(기준급 차등인상표) 규정 제28조의 1급 이하 3급갑 팀장 이상 직원의 기준급 차등 조정은 별표5의 기준을 따른다. <개정 2023.5. 22.>
- 제15조(가족수당) ①규정 제30조에 따른 가족수당은 4인이내 범위에서 별표 6에 의거 지급한다. 다만,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. <개정 2024.12.27.>
 - ②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는 직원과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 다만, 취학, 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해당 직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직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(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,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에

한한다)은 부양가족에 포함된다.

- 1. 배우자
- 2. 19세미만의 직계비속
- 3. 본인과 배우자의 60세(여자인 경우에는 55세)이상의 직계존속
- 4. 60세(여자인 경우에는 55세)미만의 직계존속 및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인
- ③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와 부양가족에 변동이 있는 자는 사유가 발생한 때 부양가족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, 신규로 가족 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발생월일을 기준으로 하며, 소멸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소멸한 날이 발생한 달분까지 지급한다.
- ④동일한 부양 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직원이 2인 이상일때에는 그중 1인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.
- ⑤가족수당의 경우 규정 제7조 및 제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제16조(시간외·야간·휴일수당) ①복무규정에 따라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.
 -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무규정에 따라 휴일근무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.
 - 1. 8시간 이내의 휴일근무 : 통상임금의 100분의 50
 - 2.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무 :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
 - ③복무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 승인을 받고 야 간근로(22시~06시 사이의 근로)를 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

-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.
- ④공사는 제3항의 경우 복무규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보상휴가 를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제17조(연차휴가수당) ①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잔여연 차휴가일수를 곱하여 지급한다.
 -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을 하였거나 동규칙 제17조에 따라 연차휴가의 저축을 한 경우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- 제18조(직원의 퇴직급여 산정방식) ①확정급여형(DB)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한 직원 의 퇴직급여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이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퇴직급여 지급기준 급여 1월분(규정 제3조에서 정한 평균임 금의 30일분)을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.
 - 퇴직급여=퇴직급여 지급기준 급여×(총 근무연수+잔여근무월수 /12)
 - ②확정기여형(DC)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한 직원의 퇴직급여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이 매년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퇴직급여 지급기준급여 1월분(연간 지급받은 보수액을 1/12한 금액)을 근무기간에 따라 월할 계산하여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납입한다.
- 제19조(휴직자 등의 퇴사시 퇴직급여 산정기준) 임원 및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인사규정 제31조 휴직, 또는 복무규정 제20조의 휴가 중 퇴직할 경우에는 휴직 및 휴가발령 당시의 급여를 기준으로 퇴

직급여를 지급한다.

- 제20조(퇴직급여의 근속기간) 휴직기간은 퇴직급여의 근속기간 산정시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휴직기간은 퇴직 급여 산정시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.
 - 1. 인사규정 제31조 제1항 제5호, 제7호, 제8호, 제9호에 의한 휴직기간(다만, 제7호의 의한 휴직중 최초 90일은 근무년수에 산입한다.)
 - 2. 육아휴직기간 중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1년 초과기간(다만, 셋째 자녀부터는 그 휴직기간 전부를 산입한다)
- 제21조(명예퇴직금의 산정 및 지급제한) ①직원이 인사규정 제39조에 의해 명예퇴직하는 경우에는 정년잔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 과 같이 명예퇴직금을 지급한다. 다만, 정년잔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호와 2호의 산정한 금액의 합산액으로 한다.
 - 1. 1년이상 5년이내:퇴직당시 평균임금의 45% 또는 연봉월액 중 높은 금액 × 정년잔여월수 / 2
 - 2. 5년초과 10년이내 : 퇴직당시 평균임금의 45% 또는 연봉월액 중 높은 금액 × (정년잔여월수 60월) / 4
 -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명예퇴직 신청일 기준 인사규정 제18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직원에게는 명예퇴직금을 지급하지 아 니한다.

- 제22조(퇴직급여의 최저지급액) 제18조에 의한 퇴직급여 지급액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을 때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 금액을 지급한다.
- 제23조(재해보상) ①직원이 업무상의 상병, 기타 재해를 당한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다.
 - ②재해보상을 받게 될 직원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, 민법,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재해보상에 상 당하는 금품을 받을 경우에는 그 가액의 한도에 있어서 공사는 보 상의 책임을 면한다.
- 제24조(급식비) 규정 제38조에 따른 급식비는 별표7의 기준을 따른다. <개정 2022.12.20.>
- 제25조(보육수당) 규정 제39조에 따른 보육수당은 별표8의 기준을 따른다.

부 칙<2021.2.24.>

이 규칙은 2021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. 단, 제25조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<2022.3.22.>

이 규칙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되, 2021년을 평가기간으로 하는 성과연봉부터 적용한다.

부 칙<2022.10.25.>

이 규칙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22.12.20.>

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23.3.28.>

이 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23.5.22.>

이 규칙은 2023년 5월 24일부터 시행하되,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<2023.11.20>

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23.11.29.>

이 규칙은 202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하되, 2023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.

부 칙<2023.12.27.>

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24.2.19.>

①(시행일) 이 규칙은 2024년 2월 19일부터 시행하되, 2024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.

②(승진가급에 관한 임시조치) 제10조 및 별표 2의 개정에도 불구하고, 전문직에 대하여 직급 구분이 도입되는 날까지는 다음 각 목과 같은 승진가급을 적용한다.

가. 수석위원: 4,800,000

나. 책임위원 : 3,600,000

다. 선임위원 : 3,600,000

부 칙<2024.12.27.>

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조의 개정은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하되, 2025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.

군경력 가산액

(단위 : 원)

군 경 력	경력가산금
매 1월	150,000

(별표 2) <개정 2023.11.29.><개정 2024.2.19.>

<u> 승진가급표</u>

(단위 : 원)

구 분	급 액
이사대우	2,400,000
1급	4,800,000
국장대우	_
부장/팀장	3,600,000
부장대우	_
3급갑	2,400,000
차장대우	1,800,000
3급을	1,800,000
4급	1,560,000
5급	_
수석위원	2,400,000
책임위원	1,800,000
선임위원	1,800,000
위원	_

(별표 3) <삭제 2023.12.27.>

(별표 4) <삭제 2023.12.27.>

(별표 5) <개정 2023.5.22.>

1급/국장직대, 2급/3급갑 팀장 기준급 차등인상표

평가등급	S	А	В	С	D
인원비율	10%	20%	40%	20%	10%
인상률	α+2.0%	α+1.0%	α	α-1.0%	α-2.0%

- ※ α는 기준 인상률
- * 당해 표는 기준인상률이 2% 이상일 경우 적용하고, 기준인상률이 2% 미만일 경우 사장이별도로 정한다.

(별표 6) <개정 2024.12.27>

가족수당표

(단위 : 원)

관계		월 지급액	
배우자		40,000	
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		20,000	
부양가족 1명당			
자녀	첫째 자녀	30,000	
	둘째 자녀	70,000	
	셋째 자녀 이후	110,000	

(별표 7) <개정 2022.12.20.>

급식비 포함액

(단위:원)

구분	월 금액
직원 및 계약직	200,000

보육수당 포함액

(단위 : 원)

구분	월 금액
직원 및 계약직	100,000